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9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시장 주차장(노외주차장에 해당) 주차요금이 저렴하여 장기주차에 따른 문제점과 요금 감면 차량의 경우 10원 미만 단위로 정산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선(안 별표 1)

구분			주차요금			정기주차권(월)	
			30분 이내	10분 초과당	1일 주차	주간제	야간제
현행	공영 주차장	노상 주차장	500	250	5,000	50,000	35,000
		노외 주차장	300	150	3,000	30,000	21,000
개정안	공영주차장	500	200	5,000	50,000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용어 변경(안 제1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7. 29.~8. 18.

나) 예고결과: 의견 일부반영(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경 남 거 창 지 역 자 활 센 터	-2년간 주차관리를 해오며 주차를 하면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잡힘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한정하여 5분 이하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삭제	-5분 이하 주차·정차로 인한 민원이 일주일에 2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5분 이하 주차·정차에 한정해 주차요금 면제로 주변 상권 보호	미반영
	-요금 감면 시 50원 단위로 정산됨 -주차요금 10분 초과당 200원 → 30분 초과 시 500원 적용 -30분 초과 시 500원 적용 및 감면 비율 50% → 60% 조정	-현행 조례상 요금 감면 시 1원 단위로 정산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미반영
	-주차요금 적용 제외 문구 수정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수정: “주차요금 적용 제외” ⇒ “주차 제한”	반영
	-주차요금표 ‘구분’ 추가	-‘구분’ 적용 시 5분 이하 주차·정차에 한정해 주차요금 면제에 따라 이동 주차가 발생할 수 있음	미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 등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가</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가</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법인등이</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법인등이</u>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현행과 같음)</p>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금액: 원)

구분	주차요금			정기주차권(월)
	30분 이하	10분 초과당	1일	
공영주차장	500	200	5,000	50,000

1.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 최초 30분으로 봄
2. 노상주차장에 한정하여 5분 이하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
3. 주차 제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이륜자동차